

세탁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성별	여성	나이	만 61세	직종	세탁업무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2010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확진 받은 2020년 7월까지 10년 4개월 동안 운동화세척, 세탁물 포장, 검품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20년 7월 치과 치료 후 발생한 과다출혈 및 전신쇠약감을 주소로 A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서 이상소견을 보여 큰 병원 권유받아 만 61세가 되던 2020년 7월 28일 B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C925)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0년 4월부터 약 10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세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라이클리닝 작업에 용매로 사용되는 퍼클로로에틸렌이 세탁물에 남아있었고 스팟팅(spottling) 업무시 솔벤트에 노출되었으며, 그밖에 계면활성제로 인하여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병과 업무 내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1년 4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운동화세척 작업(2010.04.-2013.03.)을 3년 동안 수행하였고, 세탁물포장 및 검품작업(2013.04.-2020.07.)을 7년 3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근로자 대리인이 작성한 재해발생 경위에서 스팟팅작업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시 스팟팅작업이 아닌 검품과정 중 간헐적으로 얼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업장에 2010년-20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력확인 결과 근로자가 진술한 퍼클로로에틸렌은 전 공정에서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 확인 결과 일부 노후 사업장에서 퍼클로로에틸렌 전용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퍼클로로에틸렌 전용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스톡다드 용제의 취급과 관련하여 드라이세탁 및 검품작업의 경우 2010년 - 2017까지 약 8년 동안 취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스팟팅공정은 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2020년 7월 치과 치료 후 발생한 과다출혈 및 전신쇠약감을 주소로 A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큰 병원 권유받아 만 61세가 되던 2020년 7월 B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C925)을 진단받았다. 관해유도요법 후 2020년 12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현재는 추적 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1남 7녀 중 셋째로 남동생에서 폐암 가족력이 있다. 고혈압으로 약물치료중이며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외 특이소견 없었다. 근로자는 2번의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59년생)은 만 61세가 되던 2020년 7월 28일 급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0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확진 받은 2020년 7월까지 10년 4개월 동안 운동화세척, 세탁물 포장, 검품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서는 벤젠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근로자는 세탁물 포장과 검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유계 솔벤트에 함유된 극미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노출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